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회 계 과

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(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부지매입)

구 미 시

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푸드테크 후속사업 추진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인근 부지 확보 필요

○ K-푸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탁생산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제품 양산~글로벌 인증·수출까지 지원하는 푸드테크 산업 기반 조성

2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○ 위　　치 : 선산읍 이문리 532번지 외 3필지

○ 대　　상 : 토지 4,723㎡

○ 기준가격 : 377백만원

- 토　　지 : 377백만원 (공시지가)

○ 사 업 비 : 1,300백만원(시비)

○ 사업기간 : 2027년 1월 ~ 12월

○ 주요시설 : 공유공장, 연구시설 등 식품 제조 인프라

○ 추진현황

- 신규사업 기획 및 중앙부처 사업 건의 : '26. 2. ~ 11.
-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: '26. 7. ~ 11.
- 토지소유주 협의 : '26. 8.
-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: '26. 9.

○ 향후추진계획

-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: ’26. 10.
- 감정평가의뢰 및 매매계약 체결 : ’27. 2.
- 부지매입 : ’27. 상반기

3. 근거법령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
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○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 분	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	4건	4,723	377
	1.매입	토지 건물 기타	4건	4,723	377

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 매각 시기	사 유	재산 소유자	비고
	재산 구분	소 재 지	수 량(㎡)					
총계			4,723	377				
취득	토지	이문리 532	1,503	117	2027년	사업부지 매입	유*용	
		이문리 570	1,385	117			이*수외1	
		이문리 569-1	453	35			이*수외1	
		이문리 569	1,382	108			김*원	

위 치 도


매입대상지
시유지
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


선산IC
화물차공영차고지
푸드테크
연구지원센터
지역혁신
클러스터
농업기술센터
선산읍장
선산시장

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 비용추계서
(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부지매입)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부지로 사용할 토지 매입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 가격을 산정하여 2027년 내 매입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◦ 토지매입	1,300	-	-	-	-	1,3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-	-	-	-	-	-
도 비	-	-	-	-	-	-
시 비	1,300	-	-	-	-	1,300
민 간	-	-	-	-	-	-
기 타	-	-	-	-	-	-
합 계	1,300	-	-	-	-	1,300

5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감정평가 등 사정에 따라 재정수반액이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

- 농식품산업과 푸드테크팀 김효주(054-480-5903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금 액	산출내역	비 고
총 계		1,300		
취득비	토지	1,300	◉ 토지매입비 : 1,300,000,000원	가감정평가금액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~ 5. 생략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
7. ~ 11. 생략

② 생략

□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8조(중요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"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(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② ~ ④ 생략

□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

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

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□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

제12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2.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

소 관 부 서		회 계 과 (농식품산업과)
입 안 자	과 장	임 웅 건 (신 미 정)
	팀 장	전 유 향 (김 용 국)
	담 당 자	박 재 경 (480-5072) (김 효 주) (480-5903)